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경상남도에서는 198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⁵⁸⁾」에 따라 ○○○○○○○○○○○에 경상남도 자유회관 운영을 위탁(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⁵⁹⁾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2]의 규정 등에 따르면 건물, 공작물, 구축물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와 건물, 기계,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등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시설 개·보수 사업은 민간대행 사업비가 아닌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했다.

58) 1982. 10. 5. 제정된 「경상남도반공전시관설치운영조례」가 1999. 10. 11. 「경상남도자유회관설치운영조례」로 조례명이 개정되었음

59)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건축법의 건물 증축, 대수선 뿐 만이 아니라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내부설비(보일러, 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것임(2011. 1. 17.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시행해야할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시행할 전문 기술과 능력이 없는 수탁자인 ○○○○○○○경상남도지회는 사업 전부를 다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표] 민간대행사업비 편성·집행 부적정 현황

집행 일시	사업명	사업비(원)
2016. 4. 5.	경상남도 자유회관 시설보강사업(화장실 및 청호공사 등)	100,000,000
2015. 3. 3.	경상남도 자유회관 시설보강사업(도장 및 방수 공사)	50,000,000
2014. 1. 20.	경상남도 자유회관 시설보강사업(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82,040,000

※ 자료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작성

조치할 사항 경남도지사는

앞으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시행하시기 바랍니다.